

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
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「자원의
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
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,
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, 「폐기
물관리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
진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
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9조의 규정에
따라”로 하고, “촉진하게 하기”를 “촉진하기”로, “각호1”을 “각 호의 어
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거나,
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
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

2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
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및 소매업
4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·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법 제12조의3 및 영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·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·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·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) ① <u>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·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실천을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, 「제품의 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,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) ① ----- <u>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<u>촉진하기</u>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</p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
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21조
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와
식품접객업소

2.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
의한 목욕장·숙박업중 객실
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

3.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
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·대형
점·도매센터 및 쇼핑센터 및
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
도·소매업

4.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
규정에 의한 식품제조·가공
업 및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

5. (생략)

③ 제1항의 “법상 의무사항”이
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
한다.

1.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
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
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
을 하거나, 시설을 운영하는 자
를 말한다.

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
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
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
른 식품접객업

2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
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

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
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표
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및
소매업

4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
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·
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업종

5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각 호 -----
--

1.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
른 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

재의 재질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

2.·3. (생략)

4. 재활용제품의 교환·판매매장(도·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의 경우에 한한다)의 설치·운영

5. (생략)

④ (생략)

제3조(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) ① (생략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라 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8조(과태료 부과기준)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에 관한 기준의 준수

2.·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5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조(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배출자라 함은 법 제12조의3 및 영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